

알리는 글

이 협약은 초안 작성과정에서 두 가지 주요 원칙들의 준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저자들 사이에서 토론한 결과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이다.

첫째,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규율하는 원칙들의 준수: 소스 코드에 대한 접근,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한 권리를 부여,

둘째, 불법행위법과 지적재산권법, 그리고 저작자들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권리 소유권자들의 보호에 관한 준거법으로 프랑스법을 선택.

CeCILL(Ce[a] C[nrs] I[nria] L[ogiciel] L[ibre]) 라이선스의 작성자들은:

에너지 및 원자력위원회(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énergies) – CEA, 공공 과학 기술 산업 연구소. 25 rue Leblanc, immeuble Le Ponant D, 75015 Paris, France 에 주요 사업소가 있다.

국립과학연구센터(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 CNRS, 공공 과학 기술 시설. 3 rue Michel-Ange, 75794 Paris cedex 16, France 에 주요 사업소가 있다.

국립정보학 자동제어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 Inria, 공공 과학 기술 시설. Domaine de Voluceau, Rocquencourt, BP 105, 78153 Le Chesnay cedex, France 에 주요 사업소가 있다.

서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약의 목적은 오픈 소스 배포 모델의 체계 안에서 이 라이선스에 의해 규율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용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권리의 행사는 모든 후속 재배포를 위한 지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부과한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다.

소스 코드에 접근, 라이선스에 의해 부여된 복제, 수정, 재배포할 권리의 대가로, 이용자들은 제한된 보증만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의 저작자, 경제적 권리의 소유권자, 승계 라이선서들은 제한된 책임만을 가진다.

이 점에 있어서, 이용자들은 소프트웨어의 로딩, 사용, 수정, 개발 또는 복제하는 것과 관련된 위험을 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의 지위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은 복잡하게 되고, 깊이 있는 컴퓨터 지식을 가진 개발자들과 숙련된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용자들은 그들의 시스템 그리고/또는 데이터의 안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상태의 요구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의 적합성을 테스트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안전한 상태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작업하도록 권유된다. 이 협약은 변경되지 않고, 어떠한 조항들도 추가되거나 제거되지 않는한 자유롭게 복제되고 공표될 수 있다.

이 협약은 경제적 권리의 소유자가 그것의 사용을 이 조항들에 따르기로 결정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에 적용된다.

자주 묻는 질문들은 CeCILL 라이선스 패밀리 공식 웹사이트(<http://www.cecill.info/index.en.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제 1 조 - 정의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해, 다음 표현이 대문자로 시작하면, 그것은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협약: 이 라이선스 협약, 그리고 후속 버전, 부속문서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용자가 협약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오브젝트 코드 그리고/또는 소스 코드 형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를 의미한다.

최초 소프트웨어: 협약의 규정과 조건 하에서 처음 배포되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소스 코드 그리고 있다면 오브젝트 코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그 문서를 의미한다.

수정된 소프트웨어: 적어도 한 번의 기여에 의해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소스 코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기 위하여 접근이 요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명령문과 프로그램 라인을 의미한다.

오브젝트 코드: 소스 코드의 컴파일로부터 만들어진 바이너리 파일을 의미한다.

소유자: 최초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권리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라이선시: 협약을 받아들인 소프트웨어 이용자를 의미한다.

기여자: 적어도 한 번 이상 기여한 라이선스 이용자를 의미한다.

라이선서: 협약 하에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한 소유권자, 또는 어떤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기여: 어떤 또는 모든 기여자들에 의해 내부 모듈이나 소프트웨어에 통합된 모든 수정, 교정, 번역, 개작 그리고/또는 새로운 기능을 의미한다.

모듈: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공된 것들에 덧붙여 추가 기능이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문서를 포함한) 일련의 소스 파일을 의미한다.

외부 모듈: 해당 소프트웨어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 모듈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주소 공간에서 실행되면서 서로 호출하는 모든 모듈을 의미한다.

내부 모듈: 같은 주소 공간에서 실행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연결된 모든 모듈을 의미한다.

GNU GPL: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공표한 GNU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2 또는 그 후속 버전을 의미한다.

GNU Affero GPL: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공표한, GNU Affero 일반 공중 라이선스 버전 3 또는 후속 버전을 의미한다.

EUPL: 유럽위원회에서 공표한 유럽 연합 공중 라이선스 버전 1.1 또는 후속 버전을 의미한다.

당사자들: 라이선시와 라이선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단일 그리고 복수의 형태로 사용될 수 있다.

제 2 조 -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에 의해 부여된 보호의 전체 조건에 관하여 제 5 조 이하에 규정된 바와 같이,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비배타적이며, 이전가능하고 전세계적인 범위의 라이선스를 라이선시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제 3 조 - 승낙

3.1 라이선시는 아래의 사건이 처음 발생할 때 이 협약의 규정과 조건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i) 특히 원격 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거나 물리적 매체로부터 로딩하는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소프트웨어를 로딩할 때;

(ii) 라이선스 이용자가 본 협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처음 행사할 때.

3.2 소프트웨어의 특성, 제한된 보증 그리고 그것의 사용이 숙련된 이용자들에게 제한된다는 것과 관련된 공지를 포함한 협약의 사본은 제 3.1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승낙에 앞서 라이선스 이용자에게 제공되었고, 라이선스 이용자는 그것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인정한다.

제 4 조 - 발효일과 기간

4.1 발효일

협약은 제 3.1 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라이선시에 의해 승낙될 때 발효한다.

4.2 기간

협약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전체적인 법적 기간 동안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 5 조 - 부여된 권리의 범위

라이선서는 이하에 제시된 규정과 조건을 기초로 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협약의 기간 동안, 승낙한 라이선시에게 부여한다.

또한, 만약 라이선서가 소프트웨어나 그것의 구성요소의 모든 또는 일부의 기능을 보호하는 하나 이상의 특허를 가지게 될 경우, 라이선서는 라이선시들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이용,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들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이 특허가 양도되면, 라이선서는 특허 양수인이 이 문단에 규정된 의무들에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5.1 사용할 권리

라이선시는 이하에 특정된 것을 포함하여 적용 분야에 대한 어떠한 제한 없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수단 및 형태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복제.

모든 매체로 소프트웨어를 로딩, 전시, 실행 또는 저장.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에 내재하는 아이디어와 원리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것의 작동을 관찰, 연구, 테스트하는 권리. 이것은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어떠한 로딩, 전시, 실행, 전송 또는 저장 작업을 수행할 때 적용된다.

5.2. 기여할 권리

기여할 권리는 소프트웨어를 번역, 개작, 각색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결과물을 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기여한 저작자를 명확히 공지하고, 그것의 창작일을 표시하는 경우,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여를 할 권리가 있다.

5.3 RIGHT OF DISTRIBUTION

5.3 배포할 권리

특히, 배포할 권리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매체나 수단으로든 일반 공중에게 공표, 전송 그리고 통신하는 권리, 그리고 어떤 수단으로든,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유료 또는 무료로 광고할 권리를 포함한다.

라이선시는 또한 이하에 제시된 규정과 조건에 따라 제 3 자에게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5.3.1. 수정 없는 소프트웨어의 배포

라이선시는 배포가 협약의 모든 조항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의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협약의 사본,

제 8 조와 제 9 조에 규정된 라이선서의 보증과 책임의 제한에 관한 공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코드만이 재배포되었을 경우,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의 배포로부터 적어도 3 년의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은 데이터 전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에 효과적인 접근을 허락한다는 공지.

5.3.2.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배포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에 기여하였을 때, 수정된 소프트웨어 결과물의 배포에 대한 규정과 조건은 이 협약의 모든 조항에 따른다.

라이선시는 배포가 협약의 모든 조항과 다음에 오는 것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스 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형태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협약의 사본,

제 8 조와 제 9 조에 규정된 라이선서의 보증과 책임의 제한에 관한 공지,
그리고,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코드만이 재배포되는 경우,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배포로부터 적어도 3 년의 기간 동안, 추가 비용은 데이터 전송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에 대해 효과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한 메모.

5.3.3. 외부 모듈의 배포

라이선스 이용자가 외부 모듈을 개발한 경우, 이 협약의 규정과 조건은 외부 모듈에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라이선스 협약 하에서 배포될 수 있다.

5.3.4. 다른 라이선스의 상호운용성

라이선시는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에 GNU GPL, GNU Affero GPL 그리고/또는 EURL의 버전 중의 하나의 조항들에 따르는 코드를 포함할 수 있고, GNU GPL, GNU Affero GPL 그리고/또는 EURL의 동일한 버전의 규정 하에 그 전체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라이선시는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GNU GPL, GNU Affero GPL 그리고/또는 EURL의 버전 중의 하나의 조항들에 따르는 코드에 포함할 수 있고, 그 전체 코드를 GNU GPL, GNU Affero GPL 그리고/또는 EURL의 동일한 버전의 규정 하에 배포할 수 있다.

제 6 조 - 지적재산

6.1. 최초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유권자는 최초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소유한다. 최초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소유권자가 그 저작물을 배포하기 위해 선택한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어느 누구도 최초 소프트웨어의 배포에 대한 규정과 조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소유권자는 최초 소프트웨어가 적어도 제 4.2 조에 규정된 기간 동안,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6.2. 기여에 대하여

기여를 한 라이선시는 준거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기여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이다.

6.3. 외부 모듈에 대하여

외부 모듈을 개발한 라이선시는 준거법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라 외부 모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이고, 그것의 배포를 규율하는 협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6.4. 공동 규정

라이선스 이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소프트웨어에 부착된 지적 재산 공지사항을 어떤 방법으로든 제거하거나 수정하지 말 것. ;
수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본에 공지사항을 확실한 방법으로 복제할 것.

라이선시는 소유권자 그리고/또는 기여자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침해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에 관하여, 소유권자 그리고/또는 기여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할 것을 확실히 하도록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 관련 서비스들

7.1 이 협약은 어떤 경우에도 라이선서에게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술적 도움이나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라이선서들은 위에 언급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건들은 별도의 문서에 규정될 것이다. 라이선서들은 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된다.

7.2 유사하게, 라이선서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자유롭게 선택한 규정과 조건들에 따라, 라이선시에게 소프트웨어 또는 수정된 소프트웨어의 재배포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보증과, 적용될 금융 조건들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별도의 문서에 따른다.

제 8 조 - 책임

8.1 8.2 절의 규정들을 만족한 경우,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손해를 관련 라이선서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8.2 라이선서의 책임은 본 협약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되며, 특별히 다음에 열거된 경우들은 책임이 없다. (i) 손해가 라이선시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과실에 의한 경우, (i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작동한 결과 라이선시에게 발생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해, (iii) 보다 일반적으로, 모든 간접적인 손해. 특별히, 모든 금전적 또는 경제적 손해(예를 들어, 데이터의 손실, 이윤의 손실, 고객이나 주문량의 감소, 기회 비용 등) 또는 제 3 자에 의한 관련 법적소송에 의한 손실 등은 간접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라이선서는 책임이 없다.

제 9 조 - 보증

9.1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가 배포될 때 최첨단의 과학적, 기술적인 테스트를 거쳐 발생 가능한 모든 결함이 발견된 상태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라이선시의 관심은 능숙한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로딩, 사용, 수정, 개발 또는 재생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있게 된다.

라이선시는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지,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과, 사람 또는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

9.2 라이선서는 (특히 제 5 조에서 규정한 권리를 포함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할 자격이 있음을 선언한다.

9.3 라이선시는 소프트웨어가 라이선서에 의해 제공될 때, 제 9.2 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됨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 가치, 안전성, 혁신성 등에 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특별히,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없다는 것과,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라이선시가 가진 장비와 호환된다거나 라이선시의 요구사항을 맞춘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

9.4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가 특허권 등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이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라이선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수정 및 재배포 과정에서 야기된 라이선시의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라이선시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피고인 라이선시를 위하여 기술적, 법률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도움의 범위나 정도는 각각의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라이선서는 라이선시가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사용한 것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 소프트웨어의 이름에 관한 선행 권리나 상표권의 존재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제 10 조 - 종료

10.1 라이선시가 규정을 어긴 경우, 라이선시에게 해지를 알리는 통지가 도달한 지 30 일이 지나면 라이선서는 자동으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때부터 효력은 상실된다.

10.2 협약이 종료된 라이선시는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사용, 수정 또는 배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협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규정과 조건을 준수하여 유효하게 취득한 라이선스들은 유효한 상태로 남는다.

제 11 조 - 기타 사항

11.1 면책되는 경우들

양 당사자들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피치 못할 사유로 협약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하지 못한 경우 면책된다. 예기치 못할 사유에는 전기나 통신 장애, 정부에 의한 간섭, 지진, 화재, 홍수, 폭발 사고, 파업, 전쟁 등이 포함된다.

11.2 양 당사자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황에서 규정들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를 그 규정들만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11.3 양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문서 또는 구두를 통한 별개의 협약이 있는 경우, 본 협약의 특정 규정들을 제외시키거나 다른 내용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양 당사자 측의 권한 있는 대리인에 의한 날인된 문서에 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

11.4 본 규정들이 실정법이나 장래에 시행이 예정된 법들과 상충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다른 규정들은 상관없이 유효하게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협약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의 협약은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11.5 언어

본 협약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두 가지 언어로 초안되었으며, 두 버전 모두 진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 협약의 새 버전

12.1 누구도 이 협약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12.2 일관성을 위해, 협약의 저작자들만이 협약을 수정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버전을 별도의 번호로 공표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후속 버전들은 자유 소프트웨어가 직면하는 새로운 이슈들을 포함할 수 있다.

12.3 소프트웨어는 배포될 때 적용된 협약의 버전과 같거나 또는 그 이후 버전으로만 재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5.3.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3 조 - 준거법과 관할

13.1 협약은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 당사자는 협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3.2 분쟁이 발생한 후 2 개월이 지나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분쟁은 당사자에 의하여 관할을 가진 파리 법원으로 보내진다.